

## II

# 전자세금계산서 「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」

□ 도입 배경(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)

- 이제까지는 제3자(국가기관·금융기관 등)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(취소)한 경우, 제3자가 수정(취소)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,
  - 이제부터는 ‘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’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(취소)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□ 「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」 주요 내용

-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·손택스(앱)에서 먼저 ①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\*하면 ④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\*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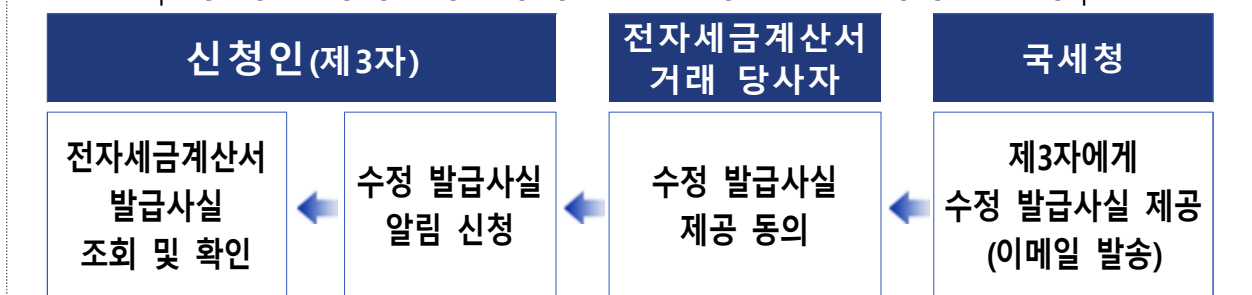
◆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: 홈택스 > 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> 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 >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>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

◆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: 홈택스 > 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> 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 >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>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관리

-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,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(제3자)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.

\*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,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

### |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절차 |



III

「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」 이용 방법

1.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(홈택스)

① <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경로>

‘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’ > ‘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’ > ‘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’ > ‘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’ 클릭

세금신고	납부·고지·환급	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	지급영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	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	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	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	세무대리·납세관리
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	·발급 (+)		·거래처 및 품목 관리 (+)		·매일 발송 (+)		·발급 보류/예정 목록 조회 (+)
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	·조회 (+)		·합계표통계 조회 (+)		·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(+)		·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(-)
			·자료 신청 (+)				·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·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·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처리
현금영수증(근로자소비자)		·근로자소비자 조회/변경 (+)		·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(+)			
현금영수증(매입지출증빙)		·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/변경 (+)		·사업자 발급수단전용카드 (+)			
현금영수증(가맹점)		·가맹점 매출 조회 (+)		·발급 (+)			

② <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>

‘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’ 에서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사실 확인

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

*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	101-22-34567	* 공급받는자 등록번호	100-01-00001
* 승인번호	20230724-20230724-20230724	* 작성일자	2023-07-24
* 공급가액	11,111		

※ 해당 정보를 조회목적 이외에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,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조회사실     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23년 07월 24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.

### ③ <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>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'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' 클릭

- ① '수정 발급사실 알림신청' 클릭
- ②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(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)
- ③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
- ④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입력
- ⑤ 신청인의 성명(상호) 및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 '신청하기' 클릭

####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

*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	101-22-34567	* 공급받는자 등록번호	100-01-00001
* 승인번호	20230724-20230724-20230724	* 작성일자	2023-07-24 <input type="text"/>
* 공급가액	11,111		

조회하기 초기화

※ 해당 정보를 조회목적 이외에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,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조회사실     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23년 07월 24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.



• 조회한 전자(세금)계산서의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

####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

※ 수정 발급사실 정보제공 동의자(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)를 선택하고, 동의안내 메일이 발송될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을 기재합니다.

* 정보제공 동의자 구분	② 선택하세요. 공급자 공급받는자	정보제공 동의자 이메일	③ <input type="text"/> @ <input type="text"/> 직접입력 ▼
정보제공 동의자 사업자등록번호		정보제공 동의자 상호 또는 성명	

※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수신받을 신청인의 이메일을 기재합니다.

\* 신청인(회신받을) 이메일      ④  @  직접입력 ▼

• 정보제공 동의자에게 신청인의 상호(성명)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필수)

⑤ 신청하기

④ <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확인>

'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' > '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' > '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' > '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' 클릭

세금신고	납부·고지·환급	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	지급영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	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	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	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	세무대리·납세관리
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	·발급 (+)	·거래처 및 품목 관리 (+)	·매일 발송 (+)	·발급 보류/예정 목록 조회 (+)			
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	·조회 (+)	·합계표통계 조회 (+)	·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(+)	·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(-)			
	·자료 신청 (+)	·본지점 종괄납부 조회권한 관리 (+)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</li> <li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">-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</li> <li>-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처리</li> </ul>
현금영수증(근로자·소비자)	·근로자·소비자 조회/변경 (+)	·소비자 발급수단·전용카드 (+)					
현금영수증(매입·지출증빙)	·사업자 매입·지출증빙 조회/변경 (+)	·사업자 발급수단·전용카드 (+)					
현금영수증(가맹점)	·가맹점 매출 조회 (+)	·발급 (+)					



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

신청	0	동의	1	비동의	1			
선택 신청 취소	-전제-		신청일자	내림차순	10	확인		
<input type="checkbox"/>	승인번호	신청일자	진행상태	동의(비동의) 일자	취소(철회) 일자	정보제공 유효기간	알림발송 여부	신청내역 상세보기
<input type="checkbox"/>	20230724-20230724-20230724	2023-07-24	동의	2023-07-24	-	2023-07-24 ~ 2024-07-23	부	상세보기
<input type="checkbox"/>	20230826-20230826-10230828	2023-08-30	비동의	2023-08-30	-	-	부	상세보기

## 2.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·비동의 처리 방법(홈박스)

‘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’ > ‘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’ > ‘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’ > ‘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처리’ 클릭

- 신청인의 정보와 전자(세금)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

세금신고	납부·고지·환급	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	지급영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	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	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	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	세무대리·납세관리
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	·발급 (+)		·거래처 및 품목 관리 (+)	·매일 발송 (+)		·발급 보류/예정 목록 조회 (+)	
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	·조회 (+)		·합계표 통계 조회 (+)	·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(+)		·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(-)	
	·자료 신청 (+)		·본지점 종결납부 조회권한 관리 (+)			·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	
현금영수증(근로자·소비자)	·근로자·소비자 조회/변경 (+)		·소비자 발급수단·전용카드 (+)			·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	
현금영수증(매입·지출증빙)	·사업자·매입·지출증빙 조회/변경 (+)		·사업자 발급수단·전용카드 (+)			·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처리	
현금영수증(가맹점)	·가맹점 매출 조회 (+)		·발급 (+)				



###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처리

-전제- [v] 알림신청일자 [v] 내릴자순 [v] 10 [v] 확인

<input type="checkbox"/>	승인번호	알림 신청일자	신청인명 (상호)	신청인 이메일	진행 상태	정보제공 유효기간	전자(세금)계산서 상세보기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20230724- 20230724- 20230724	2023-07-24	김국세	test23@nts.go.kr	신청	-	상세보기
<input type="checkbox"/>	20230826- 20230826- 10230828	2023-08-29	개인	test133@nts.go.kr	동의	2023-08-30 ~ 2024-08-29	상세보기

· 선택한 전자(세금)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신청인에게 ‘수정 발급사실이 있음’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
(제공 기간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.)

예(동의)  아니오(비동의)

· 제공 동의 이후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이메일로 발송됨을 확인합니다.

확인하기


### 3.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

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 '수정 발급사실' 발송

☰ 목록보기   ◀️ 답장   ◀️ 전체답장   ▶️ 전달   🗑️ 삭제   ✖️ 완전삭제   ➕ 이동   📄 원문저장   📄 소스보기

☆ 전자(세금)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안내

📧 보낸사람 : 국세청 <hometaxadmin@hometax.go.kr> | 📍 주소록에 추가 | 수신거부 | 헤더보기

 국세청

[홈택스에서 전자(세금)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신 [김국세]님께 보내는 안내 메일입니다.]

2023-07-24 신청한 전자(세금)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\*신청한 전자(세금)계산서 승인번호 : 20230724-20230724-20230724

(세금)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·정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별도 요청하여야 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## IV 주요 질의응답 (Q&A)

### Q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?

- 제3자(국가기관·금융기관 등)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- ◆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‘거래 당사자’ :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, (재화·용역) 공급자 또는 (재화·용역) 공급받는 자를 의미
- ◆ 제3자 :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

### Q2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?

-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(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)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.

### Q3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?

- 당사자(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)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홈(손)택스의 ‘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관리’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.

#### ※ 이용 경로

- 홈택스 : 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> 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 >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>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처리
- 손택스 : 조회/발급 > 전자(세금)계산서 조회 >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(비동의) 관리

#### Q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요?

-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※ 제공내용 : 20XX.X.X. 에 알림 신청한 전자(세금)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Q5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(1차)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(2차) 하였습니다.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,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?

-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.
- ⇒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##### 〈수정발급 알림 사례〉

- '23. 1. 1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A)
- '23. 2. 1.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B)
- '24. 1. 5.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C)
- ▶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 한 경우  
⇒ '23. 2. 1.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

#### Q6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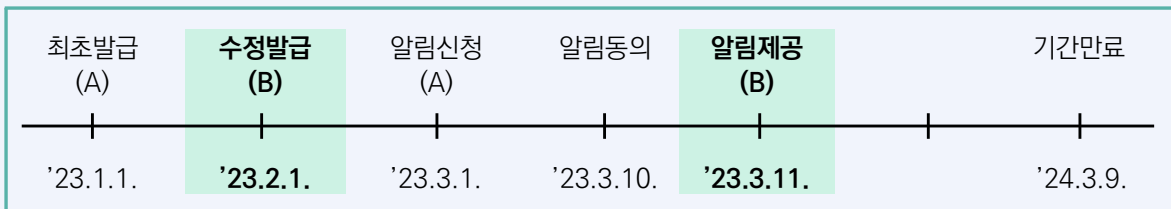
-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
## Q7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(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)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,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 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.
-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: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
-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: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

### 〈 수정발급 알림 사례 〉

- ▶ '23.1.1.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(A)하고, '23.2.1. △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(B)한 경우



- ▶ '23.1.1.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(A)하고, '24.1.1. △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(B)한 경우

